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45호)

- 2000. 6. 24.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5. 17.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0. 5. 22.
- 다. 상정일자 : 2000. 6. 24.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00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 구세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며,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분정리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2조)
 -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①항)와 형제·자매(②항)를 포함.
- (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등록명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

(3) 주차장에 대한 감면 삭제(안 제10조 및 제11조)

-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를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제 감면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과세전환하고자 함.

(4) 기타 조문정리등 자구수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하는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로 확대함. (안 제2조제2항)
-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이나 세대분거하는 경우에는 면허세를 주장함. (안 제2조제2항 단서)

- (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경우에는 면허세를 주장함. (안 제3조의2제1항)
- (3)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전통 건조물 보존법의 폐지로 관련조항 삭제 (안 제9조제4호)
- (4)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므로 세제감면이 불필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 감면조항 삭제(안 제10조)
- (5)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항 삭제(안 제11조)
- (6) 아파트형에 대한 감면근거법령인 광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99. 2. 8 개정되어 관련조문 개정(안 제18조)
- (7)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 1999. 9. 7 제정되어 관련조문개정(안 제20조)
- (8)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99. 5. 24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99. 5. 24 신설되어 관련조문개정(안 제25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 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으로써 차량의 도심진입으로 인한 교통난의 가중을 방지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제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초규 공고 제131호로 2000. 4. 10 ~ 2000. 4. 29까지 임함 예고된바 있음.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일부과세등의 조례를 개정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10(2000. 2. 25)호로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준칙통보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확대근거가 무엇인지?

답) 확대한 근거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보훈시책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준칙으로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확대한 것이며 동사항은 25개구가 공통사항임.

질)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들을 국가유공자등으로 확대하여 공동명의로 등록, 감면혜택을 볼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편법이 있을 것이며, 구세가 감면하리라 생각하는데,

답) 편법으로 등록할시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악용될 우려는 있습니다만, 제도상 공동명의로 1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수감면도 약 300만원으로 보고있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 음.